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체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원도급자, 목적물  
인수일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사업자인 ○○토건(주)(이하 피신고인이라 함)가 ○○지방방송국으로부터 TV중계소 증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수급사업자인 ○○공업사(이하 신고인이라 함)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중,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일이 88년 ○월 ○일로 연기되어 신고인은 동일자까지 공사를 시공완료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준공금의 일부인 ○○원만 지급해 주면서 나머지 ○○원은 계속 지급지연

하고 있어 이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이첩되어온 사례이다.

### 처리결과

분쟁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양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의 주장

88년 ○월 ○일까지 공사를 시공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공사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여금액 ○○원은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2~3일 후에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대금지급을 지연해 오고 있다.

### 피신고인의 주장

발주처로부터 원도급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급된 공사비의 일부도 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잔여금은 회사 자금사정으로 미지급하고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는 즉시 신고인에게 지급하겠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

이에 피신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

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우나 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미지급금 〇〇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쌍방합의한 바,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심결 처리했다.

**물가연동제 적용  
증액 금액 반드시  
지급**

**사건개요**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P시 소재 〇〇구청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피신고인이 발주자(〇〇구청)로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받고서도 하도급자인 신고인에게 이를 적용해주지 않으므로써 피신고인이 물가연동제를 적용받아 증액된 금액중 하도급자분 〇〇〇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되어온 사례이다.

**처리결과**

먼저 본 사안의 처리결과에 앞서 동 진정안에 해당하는 관련법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설계변동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공사)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

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인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신고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인은 발주처로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피신고인은 1차 출석하여 진술시에는 발주처로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자에게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협의회에서 발주처(〇〇구청)의 담당공무원과 협조·조사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었다는 관련 입증자료를 협의에 송부하여 왔다.

이를 토대로 피신고인을 재조사하자 피신고인은 1차 진술시에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물가연동제 적용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신고인에게는 기 물가연동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피신고인에게 물가연동제가 기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됐다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은 하지 못하면서 구두상으로만 계속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피신고인에게 물가연동제 적용증액 금액중 하도급자분 〇〇〇원을 조속히 지급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계속 불응하므로 협의회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물가연동제 적용으로 인한 증액 금액중 하도급자분 〇〇〇원과 기 지급공사비의 어음할인료 〇〇원을 포함, 계 〇〇〇원을 지급하도록 심결 처리했다.